

★ ◎

사장 방침 제558호

문서번호	인사팀-3059
보존기간	1년
결재일자	2015.07.07
공개여부	공개
일상감사	대상아님

팀 원	인사팀장	경영지원처장	기획경영본부장	사장
김건일	이영철	김광석	김우진	07/07 변창흠
협조	파트장	이우호	주택관리팀장	정영석

2015년도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

서울특별시 SH공사
(기획경영본부 인사팀)

2015년도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

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운영 및 예방교육 등을 통하여 공사내 성희롱 방지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밝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
I 관련 근거

■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

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(성희롱의 방지 등)

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,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서울시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(행정1부시장방침 제19호, 2015.01.26.)
- 투자출연 기관 성희롱, 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알림(인문담당관 3620, 2015.04.02.)
- 2015년 공공 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(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1113호, 2015.04.23.)

II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

■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

- 관련근거 :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지침
- 고충상담원 지정
 - 정규직, 전문직 및 계약직 : 인사팀장 외1명(남·녀 각1명)
 - 특정직 : 주택관리팀장 외1명(남·녀 각1명)
 - 고충상담원 지정시 인사·복무 담당자 포함하여 지정

■ 성희롱 고충상담 사장 HOT라인 운영

○ 운영방법 : 공사 전산시스템 활용하여 운영

- 고충상담의 실제 활용도와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 활용하여 구축
- 성희롱 고충상담 사장 HOT라인 구축은 공사 혁신과제이며, 2015년 4월 구축완료

○ 접속방법 : 경영지원→마이페이지→성희롱 고충상담 사장 Hot-Line

- 작성된 고충상담 내용은 사장 및 작성자만 확인가능
- 고충발생시 사장지시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등 관련조치 실시

■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HOT라인 신고

구분	전화	이메일
서울시 인권센터	02-2133-7978	7979@seoul.go.kr
시민인권보호관 HOT라인	02-2133-6378	sangdam@seoul.go.kr

■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

○ 관련근거 : 공공기관 성희롱예방지침

○ 위원회 구성 : 위원장 포함 6인

- 위원장 :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
-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2명 이내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 가능
- 고충심의위원에 고충상담원은 포함할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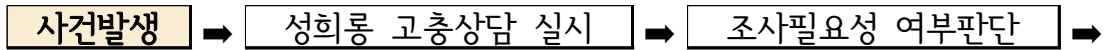
※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사건발생이후, 공정한 사건조사를 위하여 별도로 구성



성희롱 고충상담 및 처리절차

성희롱 사건 처리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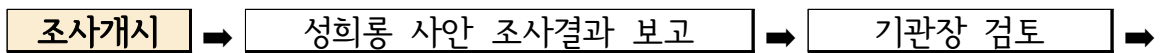
① 상담, 신고 및 접수단계



*조사필요성(N) : 당사자간 합의중재 → 합의성립시 사건종결 / 미합의시 조사개시

*조사필요성(Y) : 조사개시

② 조사단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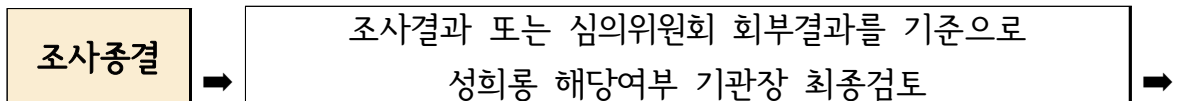


*공정한 처리 필요성(N) : 조사종결

*공정한 처리 필요성(Y) : 성희롱 심의위원회 회부 및 심의·의결 → 조사종결

- 조사는 성희롱 고충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완료하되,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안에서 조사기간 연장가능
-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성희롱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한 사안 등 기관장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
-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 또는 수사절차가 개시된 경우,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거나 더 이상 조사절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 중지 가능

③ 사건종결 단계



*성희롱 해당(N) : 당사자 통보 및 사건종결

*성희롱 해당(Y) : 행위자 징계 → 부서전환 등 필요조치 → 당사자 통보 → 사건종결

- 행위자에 대한 징계시 ‘무관용의 원칙’ 적용 :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감경 등 배제하여 징계절차 진행

■ 성희롱 행위자 인사조치 강화

-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조치
-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교육 필수 실시
-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관리로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
 - 해외연수, 각종교육 등 교육훈련 및 승진시 배제 등
-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,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

IV

교육 계획

■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계획

- 대상 : 전 임·직원, 파견근로자, 공익근무요원 등
- 내용 : 성희롱, 성폭력, 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
- 시기 : 2015년 하반기 2회 교육실시 계획
 - 공사 혁신과제 :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(연1회→연2회)
- 세부 교육계획 : 별도방침 수립

■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계획

- 교육기관 :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
- 시간 : 2일 과정, 14시간
- 대상 : 인사팀 및 주택관리팀 고충상담원(각1명)
- 실시 : 2015년 하반기 실시계획

V**행정 사항**

- 교육수료자에 대하여 직무교육 시간으로 인정
- 서울시 주관 간부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수시 참가
- 성희롱 예방 및 교육관련 세부사항은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통합메뉴얼 등 '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2015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'에 따름. 끝.